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20-172
--------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며, 장애인 가족 지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가족 지원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수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, 시행규칙
  - 2)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##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0. 10. 8. ~ 10. 28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- 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검토의견 미반영
  -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8조(차별금지 등), 같은법 제31조(실태조사)에 관련 내용 있음.
- 6)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· 의결(2020.11. 3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“장애인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- “장애인 가족”이란 「민법」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지원계획 수립 등)**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

2.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
4.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
5.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6조(지원사업)**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가족 현황, 욕구 등 실태조사
2. 장애인 가족 상담
3.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, 인식개선 등 교육
4. 장애인 가족의 긴급 돌봄 등 지원
5.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7조(수행기관 지정 등)**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,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센터 설치·운영에 대한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전 설치·운영 중인 센터는 제7조에 따라 설치·운영된 것으로 본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: 제6조(지원사업), 제7조(수행기관 지정 등)
- 수입발생 요인 : 없음

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「장애인 가족 지원센터」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
- 비용추계기간 : 2020. 11. ~ 2024. 12. (50개월)

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 이후 계속)	합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시비 보조금	14,444	86,666	87,966	89,285	90,625	368,986
	구비 보조금	14,444	86,666	87,966	89,285	90,625	368,986
	소계(b)	28,888	173,332	175,932	178,570	181,250	737,972
□ 총 비용(a-b)	28,888	173,332	175,932	178,570	181,250	181,250	737,972

## 4. 재원조달 방안

- 매년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지원

## 5. 덧붙이는 의견

-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6. 작성자 :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김영은 (☎8873)